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발의자 및 발의경과

- 의안번호 : 1123
- 발 의 자 : 이용균 의원 외 10명
- 발 의 일 : 2023년 8월 14일
- 회 부 일 : 2023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자원봉사자를 선정하고 예우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함.

3. 주요내용

- 각 자치구 및 시장이 인정하는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료 감면 등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나. 입법예고(2023. 8. 24. ~ 8. 28.) 결과: 의견없음.

5.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의4(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를 신설하여 직전년도 100시간 이상 또는 누적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각 자치구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시장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고(안 제10조의4제1항) 안 제2항에 따라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의4제2항)으로써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4(우수자원봉사자 지원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하여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직전년도 1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2. 누적 1,000시간 이상 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3. 각 자치구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정하는 사람 ②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누적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3.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및 공영

	<u>주차장 주차료 등의 할인 또는 면제</u> <u>4. 선진 자원봉사 프로그램 연수</u> <u>③ 시장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u>
--	---

○ 2023년 7월말 기준 서울시 및 자치구 자원봉사자 등록인원은 261만명이나 실질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참가인원은 19만 5천명(7.47%) 수준인 바, 동 개정안은 실질 참가자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행정국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입법 취지에는 동의하나, 개정 내용에 대해서는 유관부서(주차계획과 등) 협의와 시스템 구축 등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최근 3년간 서울시 및 자치구별 자원봉사자 등록 수 및 실질 참가자 수 현황]

(’23.7.31. 기준, 단위 :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7월말 기준)		
	등록인원	활동인원	참여율(%)	등록인원	활동인원	참여율(%)	등록인원	활동인원	참여율(%)
합 계	2,574,836	278,074	10.80	2,565,860	296,247	11.55	2,617,034	195,463	7.47
서울시	-	523	-	-	1,358	-	-	780	-
종 로	59,869	15,192	25.38	59,721	16,767	28.08	61,579	11,991	19.47
중 구	38,639	13,627	35.27	39,201	13,847	35.32	40,226	7,451	18.52
용 산	52,415	6,460	12.32	53,836	7,397	13.74	55,065	4,813	8.74
성 동	73,203	12,675	17.31	74,539	14,194	19.04	76,085	10,009	13.16
광 진	89,048	8,142	9.14	87,590	9,725	11.10	89,800	6,965	7.76
동대문	84,949	7,788	9.17	86,446	10,171	11.77	88,897	7,603	8.55
중 랑	107,353	6,494	6.05	106,520	6,619	6.21	108,139	5,216	4.82
성 북	104,143	7,777	7.47	103,211	8,929	8.65	105,656	6,283	5.95
강 북	63,258	5,052	7.99	61,239	5,737	9.37	62,401	4,309	6.91
도 봉	78,679	6,866	8.73	80,144	7,841	9.78	81,313	5,635	6.93

노 원	160,860	11,389	7.08	156,651	11,890	7.59	159,116	8,665	5.45
은 평	119,284	11,941	10.01	121,219	15,645	12.91	123,191	8,847	7.18
서대문	89,509	7,276	8.13	91,606	7,551	8.24	93,609	5,184	5.54
마 포	94,551	11,000	11.63	97,137	13,527	13.93	99,520	7,726	7.76
양 천	138,484	25,818	18.64	140,088	20,288	14.48	141,953	10,631	7.49
강 서	188,489	11,410	6.05	190,968	12,193	6.38	193,795	10,492	5.41
구 로	89,171	7,091	7.95	89,661	6,937	7.74	91,272	4,450	4.88
금 천	55,010	5,795	10.53	55,328	5,705	10.31	56,495	4,304	7.62
영등포	96,112	14,310	14.89	98,012	14,064	14.35	100,480	10,165	10.12
동 작	84,318	7,158	8.49	85,085	8,391	9.86	87,000	5,929	6.81
관 악	110,661	9,107	8.23	111,204	10,341	9.30	113,627	6,598	5.81
서 초	113,728	17,478	15.37	117,438	13,955	11.88	119,469	9,073	7.59
강 남	187,233	20,950	11.19	191,073	24,483	12.81	194,778	13,479	6.92
송 파	186,076	17,008	9.14	155,297	19,546	12.59	158,801	12,701	8
강 동	109,794	9,747	8.88	112,646	9,146	8.12	114,767	6,164	5.37

- 아울러, 환경문제, 고령화, 재난대비 등 사회적 이슈에 부응하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청년층, 중·장년층 등 각 세대별로 효과적인 홍보방안 마련을 통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내실있는 자원봉사 교육 등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대 강화에 행정국 및 서울시 자원봉사센터의 다각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다만, 조례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법령입안의 중요한 원칙인 명확성의 원칙 및 관련 법규범과의 관계에서 상호 모순·저촉되어서는 안 된다는 체계정당성의 원리 측면에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첫째, 안 제10조의4제1항제3호에서 ‘각 자치구에서 우수자원봉사자로 인정하는 사람’의 통일된 기준이 없어, 규정 적용시 혼란의 문제는 없는지와, 우수자원봉사자의 인증 방법 관련 내용이 없는 바, 공공시설 입장 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격 확인을 할 것인지(인증수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둘째, 안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서 ‘시 주관 주요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같은 항 제3호에서 ‘관람료 및 주차료 등 할인 또는 면제’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불분명하여, 규정내용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확보에 불충분한 것은 아닌지, 규정 적용 시 자의적인 해석 소지는 없는지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셋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은 상위법인 「주차장법」 제9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 등에서 조례에 위임하여 규정토록 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7조 등에서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개정안의 법률위임 적법성 여부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와의 상충 가능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주차장법」 관련 조항 〕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관련 조항]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 다음의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80을 할인한다. 다만, 지하철환승주차장의 경우에는 1일 1회당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은 면제하고 이후 주차요금의 100 분의 80을 할인한다.

가. ~ 마. (생략)

2.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할 수 있다.다만, 지하철 환승주차장에서 환승목적으로 주차하는 경형자동차와 저공해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하되, 1일 1회 주차의 경우에는 최초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3.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하여 설치된 전용주차구획에 대하여는 그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4. 녹색교통지역(「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외한 지역의 노외주차장에서 버스·지하철 환승목적으로 주차시 주차관리자동화시스템 또는 출차시 정산기를 통해 확인되면 해당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5.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 18 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시와 1일 및 월 정기권의 경우는 50를 경감한다.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7의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상권 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 등"이라 한다)에서 구매한 영수증 제시 또는 구매한 사실이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최초 2시간까지의 주차요금을 100분의 50 할인한다, 다만 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하지 아니한다.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전기자동차"는 충전 할 경우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11.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2. 바로녹색결제시스템(사전에 주차요금 납부 가능한 결제수단을 등록하여 주차요금을 자동 납부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경우 100분의 1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의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14.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

② 주차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③ 2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넷째, 공공시설의 경우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서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고, 각 시설 조례에서 이용료 면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개정안의 내용이 규정간 법 적합성을 결여하여 시민의 규범 이해를 어렵게 하고 법령체계의 혼란 및 자의적인 법적용을 야기할 소지는 없는지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지방자치법」 관련 조항]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개별시설 조례 예시]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관람료) ① 박물관의 관람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전시나 전시실을 대관받아 전시를 하는 경우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대관을 허가 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대관 전시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관람료를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관람료를 납부한 사람이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관람료를 반환한다.

제5조(관람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국민·외교사절단 및 수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2.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13.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4. 유물기증 등 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사람
15.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
16.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중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
17. 그 밖에 박물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전 문 위 원	김 정 덕	입법조사관	이 태 기
---------	-------	-------	-------

[참고자료]

〈 자원봉사 시간 기준 자원봉사자 현황 〉

(단위: 명)

자치구	자원봉사자 수		
	2022년 100시간이상	2023년 7월말 기준 누적 1,000시간 이상	2023년 7월말 기준 누적 5,000시간 이상
전체	11,139	20,469	1,811
강남구	570	1,321	120
강동구	475	887	62
강북구	320	850	91
강서구	711	1,511	115
관악구	511	591	32
광진구	352	480	46
구로구	422	647	48
금천구	399	770	54
노원구	884	1,241	59
도봉구	490	736	56
동대문구	274	374	24
동작구	305	1,050	161
마포구	560	919	107
서대문구	324	475	48
서초구	382	697	61
성동구	319	511	43
성북구	374	473	46
송파구	769	1,361	117
양천구	893	1,947	192
영등포구	431	1,012	86
용산구	209	311	25
은평구	531	1,006	92
종로구	169	363	34
중구	133	272	36
중랑구	332	664	56